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UG. 2019
Vol. 34

발간년월 2019년 8월(통권 제34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양창호 원장
감리 황진회 본부장 **자료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홈페이지** www.kmi.re.kr

금주 Contents - 해사안전 이슈

2019년 IMO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01) 주요 안전기준 결정사항 및 최신동향

IMO는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2019.6.4.~6.14)를 개최하고 해상안전 인명협약(SOLAS) 개정 등 총 17개 결의서(Res.MSC.456(101))~472(101))와 총 39개 회람문서(MSC.1/Circ.1603 등)를 채택함

■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구명설비코드 (LSA) 코드 등 10개 안전기준에 관한 10개 개정안 검토 및 채택 a)

- 제30차 SOLAS의 선박검사증서 양식*의 변경, 화물선의 구조정 수동조작 진수허용(LSA), 기체와 액체 연료관 이중 차폐장치 요건이 추가됨(IGF)

* 증서개정(SOLAS, SPS_특수목적선박 코드), 위험화물 운송규정(IBC_국제액화가스, IMSBC_고체산적화물운송코드, IMDG_국제위험물코드) 및 안전설비기준(LSA_구명설비, FSS_화재안전, IGF_가스안전)개정, 검사기준 통합(ESP_강화검사 프로그램) 기준이 마련됨

- 제30차 자율운항선박 협약 개정소요 식별(RSE) 작업 진행 및 해상 시범운항지침이 회람문서로 승인됨
-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Goal Based Standard) GISIS 모듈_IMO의 글로벌 정보제공시스템 및 검증지침서 개정이 이루어짐
- 극지해역 운항 해상인명안전협약(Non-SOLAS) 제외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논의됨
- 2020년부터 사용되는 저유황유 관련 선박 안전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사이버보안에 대한 중요 내용을 선박 및 항만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함
- 해사안전위원회 산하에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여 위원회에 승인한 사항에 대한 결의서 채택 및 기술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짐

■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율운항선박(MASS) 논의는 협약개정 소요 검토(RSE)와 임시운항 지침서(회람문서)의 채택이었음 a)b)

- 지난 100차에 이어 101차에서도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협약개정 또는 신규 협약 제정 필요성 등을 구분하기 위하여 협약개정 소요 검토(RSE)를 진행함
- RSE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보고양식을 마련하고 제1단계 작업결과를 진행하기 위하여 개최될 회기간회의('19.9.2-6)에 작업결과가 제출될 예정임
- 현재까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각 국가별로 분담하지 않은 사항인 12장, 13장에 대하여 일본이 작업을 수행하고 9월 작업반 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할 예정임
- 지난 제100차에서 결정된 임시지침 개발원칙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목표기반 접근방식으로 수행된 자율운항선박 임시지침이 완성되었음
- 우리나라가 제안한 시범운항 범위 명확화, 원격제어자 정보접근 보장, 선상과 육상운영자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제안사항이 임시지침에 반영되었음

■ 신개념 선박건조기준(GBS) 개정사항 중 감사관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기준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개정하였음 a)

- 신개념 선박건조기준 감사관 현황관리를 위한 IMO GISIS 모듈에 관한 개발경과를 공유하고 회원국에 감사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함
- 신개념 선박건조기준 개발에 관한 일반 지침서에 포함되는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개발 절차를 추가하고 신개념 선박건조기준 일반지침서 본문과 부록 2의 일부 용어 및 내용을 수정하였음(MSC.1/Circ.1394/Rev.2)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SOLAS 협약 비적용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총회결의서 초안을 채택하였음 a)

-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을 대상을 극지코드 적용을 강제화하는 방안 및 회원국의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논의함
- SOLAS를 개정하여 강제화하는 방안은 2020년 1월에 개최되는 제7차 항해통신수색 전문위원회(NCSR)에서 실행 가능성 및 영향 등을 평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기로 함
- 또한 IMO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 극지코드(안전과 환경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결의서(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하나 운항하는 선박을 사무 총장에게 통보하는 조항은 삭제) 초안을 승인하고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제31차 총회에서 채택하도록 결정함

■ 선박에서 사용되는 부적합한 연료유에 의한 엔진사고 등을 방지하고 부적합한 연료유 공급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관련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함 a)

- 엔진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화점이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유 검사를 위한 임시지침을 개발하고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논의함
- 인화점 60℃ 미만의 부적합 연료유가 선박엔진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적합한 연료를 식별하는 기준 및 공급사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함
- 또한 부적합한 연료유 공급자가 속한 회원국에서 연료유 공급자를 IMO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게 권고하는 절차 등에 관한 임시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함
- 2021년까지 저인화점 연료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작업반을 구성하고 제104차 해사안전위원회('20.5)에 부적합한 연료유 식별기준, 연료유 저온유동성 특성 등을 고려한 연료유 안전기준을 개발 완료하기로 결정함

■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지역 해역 퇴치 그룹의 활동사항 보고와 예방협력체계를 위한 역할을 강조함 a)

- 해적발생에 관한 대응체계 및 예방조치를 위한 일관된 해적 사고 및 사건 보고체계를 위한 보고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회원국간 의견 대립으로 차기 102차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함
- 아시아해적퇴치(ReCAAP) 체약국 등 다수 회원국들이 연안국 역할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 해적보고체계 유지를 주장하였음
- 한편 마샬제도 및 국제해사단체는 연안국이 아닌 지역해적센터(RRC : Regional Reporting Center)에 우선적으로 보고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아프리카 기니만 해적 퇴치 연락그룹(CGPGG) 설립 제안에 대해서는 현 체계(기니만 해양정보통합_MDAT-GoG, 기니만 해적 퇴치활동 강화 G7 협의체_G7++FOGG) 실효성을 우선 검토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제10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결의서 목록(17개)

번호	Resolution 번호	Resolution 제목
1	RESOLUTION MSC.456(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 AS AMENDED
2	RESOLUTION MSC.457(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DE FOR FIRE SAFETY SYSTEMS (FSS CODE)
3	RESOLUTION MSC.458(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 (IGF CODE)
4	RESOLUTION MSC.459(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LIFE-SAVING APPLIANCE CODE (LSA CODE)
5	RESOLUTION MSC.460(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IBC CODE)
6	RESOLUTION MSC.461(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DE ON THE ENHANCED PROGRAMME OF INSPECTIONS DURING SURVEYS OF BULK CARRIERS AND OIL TANKERS, 2011 (2011 ESP CODE)
7	RESOLUTION MSC.462(101)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 (IMSBC CODE)
8	RESOLUTION MSC.463(101)	AMENDMENTS TO THE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BCH CODE)
9	RESOLUTION MSC.464(101)	AMENDMENTS TO THE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SPS CODE)
10	RESOLUTION MSC.465(101)	RECOMMENDED INTERIM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OF SHIPS RELATING TO THE USE OF OIL FUEL
11	RESOLUTION MSC.466(101)	AMENDMENTS TO THE PERFORMANCE STANDARDS FOR THE PRESENTATION OF NAVIGATION-RELATED INFORMATION ON SHIPBORNE NAVIGATIONAL DISPLAYS (RESOLUTION MSC.191(79))
12	RESOLUTION MSC.467(101)	GUIDANCE ON THE DEFINITION AND HARMONIZATION OF THE FORMAT AND STRUCTURE OF MARITIME SERVICES IN THE CONTEXT OF E-NAVIGATION
13	RESOLUTION MSC.468(101)	AMENDMENTS TO PROMULGA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RESOLUTION A.705(17), AS AMENDED)

번호	Resolution 번호	Resolution 제목
14	RESOLUTION MSC.469(101)	AMENDMENTS TO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RESOLUTION A.706(17), AS AMENDED)
15	RESOLUTION MSC.470(101)	AMENDMENTS TO IMO/WMO WORLDWIDE MET-OCEAN INFORMATION AND WARNING SERVICE - GUIDANCE DOCUMENT (RESOLUTION A.1051(27))
16	RESOLUTION MSC.471(101)	PERFORMANCE STANDARDS FOR FLOAT-FREE EMERGENCY POSITION-INDICATING RADIO BEACONS (EPIRBS) OPERATING ON 406 MHZ
17	RESOLUTION MSC.472(101)	AMENDMENTS TO THE REVISED RECOMMENDATION ON TESTING OF LIFE-SAVING APPLIANCES (RESOLUTION MSC.81(70))

정부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1)에서 채택된 결의서를 반영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해운회사 등은 선박에 적용 준비 필요 a)c)

■ 국제협약의 채택내용 및 결의서 형태의 제·개정 사항을 국내 법령에 수용해야 하며 국내 해운사 및 선박검사기관은 결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함

- IMO에서 채택된 제101차 결의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위한 입법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하며, 정부대행검사기관(RO)은 선박검사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IMO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국내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회원국 노력은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감사대비를 위한 주요 감사항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PSC)의 대비조치임
- 현재 진행 중인 연료유 안전에 관한 지침 제정 논의는 연료유를 생산하는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지침 개정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특히 디지털 환경으로 시스템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사이버보안 문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해적문제 및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문제는 정부와 해운회사의 정보공유와 공동대처가 필요

박한선 연구위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hspark@kmi.re.kr/ 051-797-4640)

참고자료

a) IMO MSC 101/WP.1, Draft report of Maritime Safety Committee on its 101st session (2019.6.15.일 검색)
b) IMO MSC 101/WP.8, Regulatory Scoping Exercise for the use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MASS) (2019.7.15.일 검색)
c)https://gcaptain.com/britain-to-seek-european-maritime-mission-to-counter-irans-piracy/?fbclid=IwAR1SoJx _M7U3aprIql0Lx1Qc2JHuDPQfRkwNP-7Qe3HKvOC-Perd3D6Ls2o (2019.7.24.일 검색)